

|       |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| 2215622    |
| 의 퇴 인 | 곽상언의원      |
| 회 답 일 | 2025.8.14. |
| 추계번호  | 25D3316    |

#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 집회·시위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## I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  | 안 제6조(피해주민지원심의위원회)               | -집회등으로 인한 피해주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피해주민지원심의위원회를 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| 2  | 안 제7조(실태조사)                      | -행정안전부장관은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| 3  | 안 제8조(피해주민에 대한 지원금 지급 등)         | -행정안전부장관은 집회등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함<br>-지원금 지급 및 신청 기준,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| 의무규정 |
| 4  | 안 제11조(집회등피해보상사업의 계획수립 등)        | -행정안전부장관은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 지원 등을 포함하는 집회등피해보상사업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| 5  | 안 제12조(피해지역 내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지원) | -교육부장관은 피해지역 내 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대체 학습공간 이용 비용 지원, 온라인 학습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| 6  | 안 제13조(주민지원사업의 실시)               | -국가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복지사업,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의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| 7  | 안 제14조(각종 부담금의 면제)               | -안 제13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공용·공공용 시설등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면제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| 8  | 안 제15조(조세 감면)                    | -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주민에 대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를 관계법령에 따라 감면할 수 있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
## 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### 1. 근거 규정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| 미첨부 등 근거 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안 제6조(피해주민지원심의위원회) | 제1호: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 |
| 2  | 안 제7조(실태조사)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3 | 안 제8조(피해주민에 대한 지원금 지급 등)         |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 |
| 4 | 안 제11조(집회등피해보상사업의 계획수립 등)        | 제1호: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 |
| 5 | 안 제12조(피해지역 내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지원) |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 |
| 6 | 안 제13조(주민지원사업의 실시)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7 | 안 제14조(각종 부담금의 면제)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8 | 안 제15조(조세 감면)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2. 상세 사유

가. 피해주민지원심의위원회(안 제6조)·실태조사(안 제7조)·보상사업계획수립(안 제 11조)

- 안 제6조에 따른 피해주민지원심의위원회의 운영, 안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, 안 제11조에 따른 보상사업 계획 수립 등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 - 심의위원회는 제정안에 따른 피해지역 지정, 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고, 실태조사는 집회등으로 인한 피해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함
- 다만, 심의위원회, 실태조사 및 보상사업 계획 관련 재정소요는 소액으로 추정되며, 제정안의 유효기간이 2년이므로(부칙 제2조) 한시적인 경비에 해당하여 동 재정수반요인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나.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금 지급(안 제8조) 등

- 안 제8조·제11조·제12조·제13조 등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집회등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주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, 주민지원사업 등을 실시

하게 되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

- 이때 “집회등”이란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광화문광장 및 인근 지역 일대에서 발생한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신고된 옥외집회 및 시위를 말함

- 다만, 제정안의 지원금 규모 등은 안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, 안 제6조에 따른 피해주민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구체화될 수 있고, 지원금의 지급 및 신청기준, 학습권 보호를 위한 지원, 주민지원사업의 내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### Ⅲ. 부대의견

- 없음

### Ⅳ. 작성자

- 성명

|         |     |     |
|---------|-----|-----|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 |
| 행정비용추계과 | 임홍연 | 김안나 |

- 대표연락처

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성명  | 전화번호         | 이메일 주소           |
| 임홍연 | 02-6788-4673 | limhy@nabo.go.kr |